2019 자체 행정 종합감사 결과

1. 감사 개요

○ 감사기간 : 2019. 11. 18. ~ 11. 22. [5일간]

○ 감사인원 : 7명

2. 감사결과 처분내역

지적건명	지적내용	처분
1. 강의계획서 미입력	○ 교원은 매학년도 매학기 강의를 담당할 때에는 「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제102조에 의거하여 강의개요, 성적평가, 교재·참고도서, 강의일정 및 과제학습 등이 포함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하고, 학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학기 개강 30일전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공고하여야 함에도, -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교원 12명이 총 15개의 강좌에 대하여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	ㅇ **시정** - 향후 강의계획서 관리가 미흡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
2. 전임교원 책임시수 미준수	○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조, 「금오공과대학교 학칙」 제7조 및 「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제97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강의를 담당하여야 하고, 책임시수 미달교원은 부족시수를 다음 학기 책임시수에 이월하여 충족하여야 함에도, -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전임교원 3명은 개설강좌 폐강 등의 사유로 주당 책임시수보다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부족하게 수업을 담당하고도 다음 2개 학기 이내 보충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	ㅇ **시정** -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
3. 강의시간 주 3일 이상	○「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제105조 제7항에 따르면 교원의 강의시간은 주 3일 이상 분산 배정하여야 함에도, -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전임교원 19명은 주 1~2일 이내로 수업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있음	ㅇ **시정** -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
4.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	○ 금오공과대학교 내부위임전결규정 <별표 1> 공통위임전결구분표에 의하면 업무추진비(기관운영비, 행사비, 회의비 등) 집행시,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부서장 전결권자로 위임되어 있으나, - "2017년 2학기 ○○○ ○○ ○○○○○○ 오리엔테이션" 등 4건에 대하여 총장 결재 없이 원장 전결로 집행하였으며, ○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, 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에 의하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에도, - "제22기 □□□□□□□ □ □□□□□□ 수료 행사" 등 6건에 대하여 참석자 서명부 증빙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음.	ㅇ **주의(5명)** ㅇ **시정** -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
5. 외부위원 용역비 기타소득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미징수	○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(기타소득) 제1항 제19호 라목의 "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"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(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)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제1항 제6호 라목의 "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"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 13 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하나, - 2017학년도 1학기 ◎◎◎◎◎◎◎ 관련 수당 등 <기타소득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미징수 현황>과 같이 4건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22,400원 및 지방소득세 12,240원을 원천징수 없이 용역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.	ㅇ **주의(4명)** ㅇ **시정** -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